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60호 2013. 2. 13 (수요일)

공 고

- 하동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13- 3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2
- 하동군 공고 제2013- 118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자진반납..... 18
- 하동군 공고 제2013- 119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9

회 람									
----------------	--	--	--	--	--	--	--	--	--

하동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13-3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02 월 08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과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최적의 시설을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가.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내용
 - 시설개방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휴관일 - 1월1일, 설·추석 연휴, 매주 화요일
 -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이용 시간 - 06:00~22:00(평일), 09:00~18:00(토요일, 공휴일)
 - 나. 이용료에 관한 내용
 -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하 동 군 공 보

(3) 제 360 호

※이용요금(단체는 1일이용권 500원 감면)

(단위: 원)

	수영장						헬스	
	1회 이용료			월 이용료			월 이용료	
	일반	학생· 군인	어린이 ·경로	일반	학생· 군인	어린이 ·경로	일반 (경로)	청소년
하동군	3,000	2,500	2,000	50,000	40,000	30,000	35,000 (25,000)	30,000

- 이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9~10조)

- 초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초과시간 당 일반 기본요금의 1/2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1일까지 하동군(참조 : 하동군 체육시설사업소 전화 : 055-880-6444, FAX : 055-880-6443, Email : ha0901@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의안 번호	제	호
----------	---	---

제출연월일 : 2013. 2. .
제 출 자 : 하 동 군 수

1. 제정이유

-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최적의 시설을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내용
 - 시설개방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개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이용 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나. 이용료에 관한 내용
 -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회원증 발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이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9~10조)
 - 초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다.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마. 체육 지도사 등의 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바.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사.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 「국민체육진흥법·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13년 1회 추경 추가 운영비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기획, 감사법무담당, 예산담당)

라. 다른 시·군 입법선례

-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2007. 04. 04)
-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1995. 6. 1.)
-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2004. 7. 22.)
-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1991. 5. 27.)

마. 계획안 : 붙임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과 건전여가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하동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어린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자를 말한다.
3.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병장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
5. "일반"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
6. "단체"라 함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인 이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용일수"라 함은 회원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이용료 반환 청구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한 날을 제외한다.

제3조(운영 시설) 하동군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실내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2. 부대시설 : 매표소, 매점, 관리사무실 등

제4조 (시설개방 및 휴관)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시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개방시간 및 휴관, 이용수칙 등
2. 시설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이용방법 등

③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추석연휴, 매주 화요일
2. 기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5조(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이용 시간) ①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06:00부터 22:00까지
2. 토요일, 공휴일 : 09:00부터 18:00까지

②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징수 등) ①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비회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1일 이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이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증 발행) ① 체육시설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한다)은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원모집 및 회원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회원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은 전산처리 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을 적용은 일반인 이용료 기준으로 하며, 감면 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및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이용자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우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이용료 잔액 반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이용료 잔액 반환
3. 군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이용료 잔액 반환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용이 정지된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이용료 잔액 반환
5. 이용자가 이용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6. 이용자가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반환
7. 1회 이용권 및 월 회원권을 이용하지 않음을 사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초과 이용료) ①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기본요금의 1/2의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초과이용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12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자
6.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하거나 퇴장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3조(손해배상) ①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동시에 진다.

제14조(체육지도자 등의 근무) ① 군수는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취미 및 프로그램 관리운영을 위해 기타 강사 등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무하는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기타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국민체육센터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관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제7조 관련)

(1인 기준 / 단위 : 원)

구 분	기준	1회 이용		월 회원	비고	
		개인	단체			
수영장	어린이	1회 2시간	2,000	1,500	30,000	○ 기준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이용 료의 1/2 징수 ○ 단체는 20인 이상 이 동일한 목적으 로 동시에 입장 함을 말한다.
	청소년 및 군인	“	2,500	2,000	40,000	
	일 반	“	3,000	2,500	50,000	
	경로우대 (65세이상)	“	2,000	1,500	30,000	
헬 스	청소년 및 군인	“	-	-	30,000	
	일 반	“	-	-	35,000	
	경로우대 (65세이상)	“	-	-	25,000	

【별표 2】

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제9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전액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전액	
하동군 방문 전지훈련 팀	전액	
하동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	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유공자1명당 1명)의 경우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감면 적용은 각 월 이용료 기준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액 또는 50%	

※ 감면 적용은 일반인 이용료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1일 이용권(제7조 관련)

<p>No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이용권 원부 (보관용)</p> <p style="text-align: center;">금 액 : _____ 원</p> <p>○ 이용시설 : 수영장, 헬스장 ○ 이 용 자 : 어린이, 청소년, 일반, 경로대상자</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수납자 : _____ (인)</p>	<p>No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1일 이용권</p> <p>○ 이용시설 : 수영장, 헬스장 ○ 이 용 자 : 어린이, 청소년, 일반, 경로대상자</p> <p style="text-align: center;">입장권은 당일에 한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 체육시설사업소 (인)</p>
-----------------------------------------------------------------------------------------------------------------------------------------------------------------------------------------------------------------------------------------------------------------------------------	-----------------------------------------------------------------------------------------------------------------------------------------------------------------------------------------------------------------------------------------------------------------------------------------------------------

【별지 제2호 서식】

일일입장권 수불부(제7조 관련)

결 재			월일	구분	적 요	수 입	불출	잔고	비고
소장	담당주사	담당자							

※ 수영장, 헬스장 구분 작성

하 동 군 공 보

(14) 제 360 호

【별지 제3호 서식】

수 입 일 계 표(제7조 관련)

구 분		비회원		회 원		누 계				비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비회원		회 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수 영 장	개 인	여anyi								
		중·고생 및군인								
		일 반								
		경로자								
		소 계								
	단 체	여anyi								
		중·고생 및군인								
		일 반								
		경로자								
		소 계								
계										
헬 스 장	개 인	중·고생 및군인								
		일 반								
		경로자								
		소 계								
	계									

【별지 제4호 서식】

국민체육센터(일반, 강습)회원가입 신청서(제8조 관련)

성 명			회 원 번 호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	집 : 핸드폰 :
회 비	원	감면사유		
건강상태	양 호() 치료 중() 회복 중()	질 환 명	☆ 심장질환자 및 피부질환자 는 필히 기재	
회원구분	일반회원() 강습회원()			
희 망 강습시간				
강 습 반				

◇ 회 원 이 용 안 내 ◇

1. 하동군 국민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06:00~22:00까지입니다.
※ 정기휴관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화요일
2. 수영장, 헬스장은 1일 1회 2시간 이용가능 합니다.(2회 이상 사용불가)
3. 유아는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회 원 증(제8조 관련)

전면

후면

<p>No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회원증 원부 (보관용)</p> <p>금 액 : _____ 원</p> <p>○ 주 소 :</p> <p>○ 성 명 : (성별)</p> <p>○ 생년월일 :</p> <p>○ 기 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p> <p>○ 이용시설 :</p> <p style="text-align: center;">.</p> <p>수납자 : (인)</p>	<p>No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회 원 증</p> <p>○ 주 소 :</p> <p>○ 성 명 : (성별)</p> <p>○ 생년월일 :</p> <p>○ 기 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p> <p>○ 이용시설 :</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 체육시설사업소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회원 이용 안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회원증은 본인 이외는 사용하지할 수 없습니다. 2. 등록하신 회원증은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실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본 회원증을 미 지참 시는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	-----------------------------------------------------------------------------------------------------------------------------------------------------------------------------------------------------------------------------------------------------------------------------	-----------------------------------------------------------------------------------------------------------------------------------------------------------------------------------------------------------------------------------------------------------------------------------------------------------

【별지 제6호 서식】

회 원 등 록 부(제8조 관련)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등록일자	종료일자	회비수납액	비 고

※ 수영장, 헬스장 구분 작성

하동군 공고 제2013 -118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하 동 군 수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대아건설(주)
2. 대표자 : 김충환
3. 영업소소재지 :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808(☎ 055-884-0452)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유엔텍(주)]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 하동수질-1호)
6. 신규등록일자 : 2009. 8. 6.
7. 등록취소일자 : 2013. 2. 8. 끝.

하동군 공고 제2013-119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하여 시효연장,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엄정한 회계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양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음
-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
 - 공금횡령 등 금액을 기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비위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보완

3. 주요골자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중징계 금액기준 추가(안 제2조 별표1)
 - 현재 공금횡령(유용)에 대하여 비위정도,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양정
 - **【추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요구권자는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 요구
 - ※ 공금유용도 횡령에 해당하므로 금액기준 동일하게 적용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4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880-2153, FAX 880-2159, borisu656@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13. 2. .
제 출 자 : 하 동 군 수

1. 제안 이유

-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하여 시효연장,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엄정한 회계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양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음
-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데,
 - 공금횡령 등 금액을 기준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비위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보완

2. 주요골자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중징계 금액기준 추가(안 제2조 별표1)
 - 현재 공금횡령(유용)에 대하여 비위정도,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양정
 - **【추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요구권자는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 요구
 - ※ 공금유용도 횡령에 해당하므로 금액기준 동일하게 적용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등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표준안】**」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라. 합 의 : 기획감사실장
- 마.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일간
 - 나) 예고방법 : 하동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액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된 징계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적용한다.

하 동 군 공 보

(22) 제 360 호

[별표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 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타	과면 과면 과면 과면-해임	과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과면 과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과면 과면 과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과면 과면-해임 과면-해임 과면-해임 과면-해임	과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과면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라. 기타	과면 과면 과면-해임 과면-해임	과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과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과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과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비고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